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7.11.15.(수)

책 임 자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 (02-2100-2680)		차 영 호 사무관 (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 권 추 (02-3145-7700)		정 광 윤 팀 장 (02-3145-7730)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 상 원 (02-3145-7290)		정 두 회 팀 장 (02-3145-7313)
			이 목 희 팀 장 (02-3145-7320)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장 장 석 일 (02-3145-7860)		김 은 순 팀 장 (02-3145-7864)
	공인회계사회 감리2본부 한 진 희 (02-3149-0361)		박 인 숙 위 원 (02-3149-0363)

제 목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17. 11. 15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마제스타, ㈜크레아군산 등 6개사에 대하여,

○ **검찰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참고로, **비상장사**인 ㈜크레아군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하였음

※ ㈜마제스타, ㈜서희건설, 현대건설㈜ 및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11.15. 의결)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마제스타(舊 제이비어뮤즈먼트㈜ 및 舊 ㈜에이케이벨루가) ※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종속회사인 ㈜마제스타(舊 ㈜에이케이벨루가)를 흡수합병('15.2.25.)하고 상호를 ㈜마제스타로 변경 **(舊 제이비어뮤즈먼트㈜)** 결산기 :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03.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舊 ㈜에이케이벨루가)** 결산기 : 2013.12.31. 2014.12.31. 비상장법인 업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회사(舊 제이비어뮤즈먼트㈜ 관련)】** ① 무형자산 과대계상('13.12.31. 연결 769백만원, '14.12.31. 연결 1,145백만원, '15.12.31. 개별 1,145백만원, '16.12.31. 개별 1,145백만원, '17.3.31. 개별 1,145백만원) - '12.9월 카지노 사업 인수시 무형자산(영업권: 카지노 허가권) 취득과 관련하여 완료하지 못한 회계처리가 없었음에도 인수 후 1년이 지난 후에 무형자산 취득과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 ② 매출채권 과대계상('15.12.31. 개별 1,172백만원, '16.12.31. 개별 1,172백만원) - '15년에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고 '16년 중 동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상각하여 '15년 개별재무제표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였으며, '16년 개별재무제표상 관련 비용(대손상각비 등) 등을 과대계상함 ③ 지급수수료 및 차입금 과소계상('15.12.31. 개별 500백만원, '16.12.31. 개별 500백만원) - '15년말 고객전문모집인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5억원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5억원을 차입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하였고, '16년에 동 차입금 5억원을 상환하고도 회계처리를 누락함으로써, '15년에 지급수수료와 차입금 5억원을 과소 계상하였으며, '16년에 차입금 상환과 관련하여 이익 등 5억원을 과소계상함 ④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기재 누락('12.12.31. 연결 16,215백만원, '13.12.31. 연결 16,215백만원, '14.12.31. 연결 16,215백만원, '15.12.31. 개별 17,870백만원) -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 및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에 대해 '12~'13회계연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권리제한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12년~'15년 재무제표 등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않음	**회 사 :** - 과징금 ※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과태료 150백만원 - 증권발행제한 6월 (2017.11.15.~2018.5.14.) - 감사인지정 3년 (2018.1.1.~2020.12.31.)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검찰고발(회사 및 前 대표이사) - 검찰통보[前대표이사]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마제스타(舊 제이비어뮤즈먼트㈜ 및 舊 ㈜에이케이벨루가)	⑤ 종속회사 지분 담보제공 사실 주석 허위기재('13.12.31. 연결 및 별도 14,847백만원) - '14.1.2.~'14.3.24.(감사보고서일) 기간 중 사채업자 차입금의 담보로 종속회사인 ㈜XXXX 주식 760여만주(장부금액 14,847백만원)를 실물로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13년 재무제표 등 주석(보고기간 후 사건)에 회사가 동 주식 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함 ⑥ 제7회 전환사채 발행관련 담보제공 사실 주석 기재 누락('17.3.31. 개별 10,400백만원) - 제7회 전환사채 발행 시 사채권자에게 회사가 보유중인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주석에 동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 ⑦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분류 오류(지급수수료)('14.12.31. 연결 5,700백만원) - 고객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고객알선을 위한 마케팅 비용 57억원을 판관비인 지급수수료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단기대여금으로 처리 후 전액 상각하여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함으로써 판관비를 57억원 과소계상하고 기타비용을 57억원 과대계상함 ⑧ 제2회 전환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주석 기재 누락('16.12.31. 개별 6,550백만원, '17.3.31. 개별 6,550백만원) - 제2회 전환사채에 '16.11.15.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최대주주를 변경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음 ⑨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 회사는 '13년~'16년까지 총 4회의 소액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서류에 상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2012.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3.12.31.] 연결당기순이익 △22,408 → △23,177 연결자기자본 25,565 → 24,796 [2014.12.31.] 연결당기순이익 1,676 → 1,300 연결자기자본 35,135 → 33,990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마제스타(舊 제이비어뮤즈먼트㈜ 및 舊 ㈜에이케이벨루가)	[2015.12.31.] 당기순이익 △3,154 → △4,826 자기자본 41,916 → 39,099 [2016.12.31.] 당기순이익 △22,276 → △20,604 자기자본 56,950 → 57,477 [2017.3.31.] 당기순이익 △5,589 → △5,589 자기자본 52,789 → 51,644 **【회사(舊 ㈜에이케이벨루가 관련)】** ① 무형자산 과대계상('13.12.31. 개별 769백만원, '14.12.31. 개별 610백만원) - '12.9월 카지노 사업 인수 시 무형자산(영업권: 카지노 허가권) 취득과 관련하여 완료하지 못한 회계처리가 없었음에도 인수 후 1년이 지난 후에 무형자산 취득과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 ② 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기재 누락('13.12.31. 개별 16,215백만원, '14.12.31. 개별 8,648백만원) -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에 대해 '12~'13회계연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권리제한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13년~'14년 재무제표 등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않음 ③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분류 오류(지급수수료)('14.12.31. 개별 5,700백만원) - 고객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고객알선을 위한 마케팅 비용 57억원을 판관비인 지급수수료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단기대여금으로 처리 후 전액 상각하여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함으로써 판관비를 57억원 과소계상하고 영업외비용을 57억원 과대계상함 [2013.12.31.] 당기순이익 △526 → △1,295 자기자본 △3,035 → △3,804 [2014.12.31.] 당기순이익 △4,245 → △4,855 자기자본 △11,415 → △12,025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마제스타(舊 제이비어뮤즈먼트㈜ 및 舊 ㈜에이케이벨루가)	**【감사인(舊 ㈜에이케이벨루가 감사 관련)】** ① 무형자산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3.12.31. 개별 769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2기(2013.1.1.~2013.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사업 인수와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반영함으로써, '13년 재무제표의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였음에도, 무형자산 증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무형자산 권리제한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3.12.31. 개별 16,215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2기(2013.1.1.~2013.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형자산(영업권: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권리제한이 발생한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도원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공인회계사 : 1인**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마제스타(舊 제이비어뮤즈먼트㈜ 및 舊 ㈜에이케이벨루가)	**【감사인(舊 제이비어뮤즈먼트㈜ 감사 관련)】** ① 무형자산(영업권)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연결 1,145백만원, '15년 개별 1,145백만원, '16년 개별 1,145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17기(2014.1.1.~2014.12.31.)부터 제19기(2016.1.1.~2016.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사업 인수와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반영하여 공시함으로써, '14~'16년 연결재무제표 등의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무형자산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매출채권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5년 개별 1,172백만원, '16년 개별 1,172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18기(2015.1.1.~2015.12.31.)부터 제19기(2016.1.1.~2016.12.31.)까지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15년에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고 '16년 중 동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상각하여, '15년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였으며, '16년 매출채권 관련 비용(대손상각비 등) 등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매출채권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③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연결 16,215백만원, '15년 개별 17,87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17기(2014.1.1.~2014.12.31.)부터 제18기(2015.1.1.~2015.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유형자산(토지, 건물) 및 무형자산(영업권: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권리제한이 발생한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참회계법인 :** (舊 제이비어뮤즈먼트㈜ 관련)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 ㈜마제스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舊 ㈜에이케이벨루가 관련)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공인회계사 : 1인** (舊 제이비어뮤즈먼트㈜ 관련) - ㈜마제스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마제스타(舊 제이비어뮤즈먼트㈜ 및 舊 ㈜에이케이벨루가)	④ 기타의 대손상각비(지급수수료) 계정 분류 오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연결 5,70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17기(2014.1.1.~2014.12.31.)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고객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마케팅 비용 57억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인식 후 전액 상각하여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함으로써, 판관비를 57억원 과소계상하고 기타비용을 57억원 과대 계상하였음에도, 단기대여금의 대손 인식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⑤ 제2회 전환사채 주석 기재 누락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6년 개별 6,55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19기(2016.1.1.~2016.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16.11.15.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최대주주를 변경하여 제2회 전환사채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 발행 조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舊 ㈜에이케이벨루가 감사 관련)】** ① 무형자산(영업권)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개별 61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3기(2014.1.1.~2014.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사업 인수와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반영하여 공시함으로써, '14년 재무제표의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였음에도, 무형자산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마제스타(舊 제이비어뮤즈먼트㈜ 및 舊 ㈜에이케이벨루가)	② 무형자산 권리제한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개별 8,648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3기(2014.1.1.~2014.12.31.)의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형자산(영업권: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권리제한이 발생한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③ 기타의 대손상각비(지급수수료) 계정 분류 오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개별 5,70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3기(2014.1.1.~2014.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고객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마케팅 비용 57억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인식 후 전액 상각하여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함으로써, 판관비를 57억원 과소계상하고 영업외 비용을 57억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단기대여금의 대손 인식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서희건설 결산기 :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 3.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건물건설업	**【회사】** ①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09년 6,401억원, '10년 10,153억원, '11년 11,634억원, '12년 10,424억원, '13년 9,818억원, '14년 9,424억원, '15년 9,061억원, '16년 2,932억원, '17년 1분기 2,932억원) - 회사는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특수관계자 등이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009.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0.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1.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2.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3.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4.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5.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6.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7. 3.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회 사 :** - 과징금 ※ 과징금 부과액은「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2018.1.1.~2019.12.31.)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서희건설	【감사인】 ①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09년 6,401억원, '10년 10,153억원) -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한영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 ㈜서희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1인** - ㈜서희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 1인** - ㈜서희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서희건설	【감사인】 ①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1년 11,634억원, '12년 10,424억원, '13년 9,818억원, '14년 9,424억원, '15년 9,061억원, '16년 2,932억원) -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대주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 ㈜서희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4인** - ㈜서희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현대건설㈜ 결산기 : 2013.12.31. 2014.09.30. 2014.12.31. 2015.12.31. 2016.12.31.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업종 : 종합건설업	**【회사】** ①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별도 및 연결 동일 : '13.12.31. 51,766백만원, '14.9.30. 218,307백만원, '14.12.31. 159,495백만원, '15.12.31. 105,829백만원, '16.12.31. 91,319백만원) - 회사는 일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률 산정시 반영하지 않아 공사 기간 중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함 ②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재무제표 미반영(연결 : '13.12.31. 37,146백만원, '14.9.30. 75,401백만원, '14.12.31. 58,995백만원, '15.12.31. 58,995백만원) - 회사는 종속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함 ③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별도 및 연결 동일 : '15.12.31. 12,791백만원, '16.12.31. 12,791백만원) - 회사는 손상징후가 명백한 아파트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④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회사는 2014.8.28. ~ 2016.11.2. 기간 중 제출한 총 4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2013.12.31.] 별도당기순이익 360,278 → 308,512 별도자기자본 4,683,826 → 4,632,060 연결당기순이익 569,644 → 480,731 연결자기자본 5,203,075 → 5,114,162 [2014.9.30.] 별도당기순이익 236,556 → 70,015 별도자기자본 4,848,564 → 4,630,257 연결당기순이익 410,393 → 206,143 연결자기자본 6,784,779 → 6,491,071	**회 사 :** - 과징금 ※ 과징금 부과액은「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1년 (2018.1.1.~2018.12.31.)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현대건설㈜	[2014.12.31.] 별도당기순이익 313,135 → 205,406 별도자기자본 4,946,384 → 4,786,889 연결당기순이익 586,697 → 457,119 연결자기자본 6,966,312 → 6,747,821 [2015.12.31.] 별도당기순이익 276,558 → 317,433 별도자기자본 5,227,964 → 5,109,344 연결당기순이익 584,027 → 683,898 연결자기자본 7,491,265 → 7,372,645 [2016.12.31.] 별도당기순이익 243,052 → 347,162 별도자기자본 5,484,518 → 5,470,008 연결당기순이익 650,376 → 754,486 연결자기자본 8,142,307 → 8,127,797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현대건설㈜	**【감사인】** ① 매출액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별도 및 연결 동일 : '13.12.31. 51,766백만원, '14.12.31. 159,495백만원, '15.12.31. 105,829백만원, '16.12.31. 91,319백만원) - 감사인은 총공사예정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공사현장들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연결 : '14.12.31. 58,995백만원, '15.12.31. 58,995백만원) - 감사인은 그룹감사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일부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③ 공사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별도 및 연결 동일 : '15.12.31. 12,791백만원, '16.12.31. 12,791백만원) - 감사인은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동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안진회계법인 :** - 과징금 ※ 과징금 부과액은「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1인** -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누리플랜 결산기 :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회사】** ① 횡령 관련 불법행위미수금 과소계상 등('09.12.31.~'14.12.31. 1,152백만원) - 회사는 '06년~'09년 기간 중 前대표이사 2인이 구매대금 및 급여를 과다지급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152백만원을 횡령한 결과 '09년부터 '13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 또한, 前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횡령피해자금을 불법행위미수금 회수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14년 잡이익으로 잘못 계상하여 '14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석공시 누락('13.12.31. 1,200백만원, '14.12.31. 941백만원) - 회사는 '13년 및 '14년 당시 회사의 주요 경영진으로부터 과거 횡령과 관련하여 회수한 자금을 특수관계자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③ 무형자산 과대계상('15.12.31. 및 '16.12.31. 500백만원) - 회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사업권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15년과 '16년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2009.12.31.] 당기순이익 3,508 → 3,761 자기자본 15,802 → 16,954 [2010.12.31.] 당기순이익 변동사항 없음 자기자본 24,658 → 25,810 [2011.12.31.] 별도당기순이익 변동사항 없음 별도자기자본 27,575 → 28,727 연결당기순이익 변동사항 없음 연결자기자본 27,035 → 28,187	**회 사 :** - 과징금 20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2018.1.1.~2019.12.31.)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2인)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누리플랜	[2012.12.31.] 별도당기순이익 변동사항 없음 별도자기자본 26,782 → 27,934 연결당기순이익 변동사항 없음 연결자기자본 26,406 → 27,558 [2013.12.31.] 당기순이익 변동사항 없음 자기자본 25,142 → 26,294 [2014.12.31.] 당기순이익 △8,673 → △9,825 자기자본 변동사항 없음 [2015.12.31.] 당기순이익 984 → 484 자기자본 17,764 → 17,264 [2016.12.31.] 당기순이익 변동사항 없음 자기자본 19,783 → 19,283	

(공인회계사회 감리2본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크레아군산 결산기 :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비상장법인 업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회사】** ① 선급금 및 유형자산 과대계상('12.12.31. 10,687백만원, '13.12.31. 16,115백만원, '14.12.31. 17,774백만원) - 회사는 외주관련 제조경비를 선급금 및 유형자산으로 임의 대체하여 선급금 및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 ② 재고자산 과대계상('13.12.31. 4,202백만원, '14.12.31. 7,062백만원) - 회사는 결산시 제품 등의 수량 및 단가를 임의 조정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③ 영업외비용 과대계상('15.12.31. 24,836백만원) - 회사는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를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함 [2012.12.31.] 당기순이익 1,937 → △5,469 자기자본 20,614 → 9,927 [2013.12.31.] 당기순이익 1,184 → △8,446 자기자본 21,798 → 1,481 [2014.12.31.] 당기순이익 △3,033 → △7,552 자기자본 18,765 → △6,071 [2015.12.31.] 당기순이익 △39,608 → △14,772 자기자본 영향 없음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0월 (2017.11.15.~2018.9.14.) - 감사인지정 3년 (2018.1.1.~2020.12.31.) - 검찰고발(회사, 前대표이사 2인) - 검찰통보(前대표이사) *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공인회계사회 감리2본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크레아 결산기 : 2013.12.31. 2014.12.31. 2015.12.31. 비상장법인 업종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회사】 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오류('13.12.31. 6,095백만원 및 '14.12.31. 5,676백만원 자기자본 과대계상, '15.12.31. 5,676백만원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 회사는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 적용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잘못 계상함 ②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15.12.31. 3,840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013.12.31.] 당기순이익 1,655 → △1,234 자기자본 21,615 → 15,520 [2014.12.31.] 당기순이익 1,152 → 1,571 자기자본 23,258 → 17,582 [2015.12.31.] 당기순이익 △57,339 → △51,663 자기자본 영향 없음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6월 (2017.11.15.~2018.5.14.) - 감사인지정 2년 (2018.1.1.~2019.12.31.)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건당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해외증권 발행 및 회생계획에 따른 증권발행은 제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 직무연수

-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